

- (2)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3) 시·도교육감은 교원·교육전문직원의 전직 및 인사교류 등에 있어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현장 연계성 유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교육공무원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전직등의 제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전직등의 제한) 제1항 제7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 (2)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4)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

2)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제18조 ~ 제19조)

가) 교원의 전직

- (1) 결원보충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등학교 교원이 중등학교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중등학교 교원이 초등학교교원자격증을 소지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자격증과 관련 있는 직위에 전직 임용할 수 있다.
- (2) 교원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교원을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교육전문직원임용전형기준에 의하여 임용하고,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다만, 교(원)장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교육전문직원 경력자는 전형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용할 수 있다.
- (3) 보건교사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간 전직임용은 결원보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경력 년수 순위에 따라 3개 지역 이내의 희망지에 전직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희망자에 구애 없이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희망지 이외 지역에도 임용할 수 있다.

나) 교육전문직원의 전직

- (1) 교육전문직원에 있는 자가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육전문직원 이전의 직위에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감경력이 있고 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전문직 2년 이상 계속 재직자이고,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
- (2)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사가 교육전문직원에 임용되어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교육전문직 경력 5년 이상으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0년 이상인 재직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다.
- (3) 교육전문직원의 전직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은 동일직에서 10년 이내에 전직하여야 하며 동일직급의 전문직에서 2개 이상의 상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 (나) 경기도교육청의 국장, 과장, 장학관, 교육지원청의 국(과)장 및 직속기관의 교육연구관은 당해 직위에서 3년 이내, 직속기관장, 교육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전직하여야 한다. 단, 교육감이 교육행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기도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시킬 수 있다.